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24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나경원 · 박준태 · 이종욱
서지영 · 고동진 · 김민전
김재섭 · 서천호 · 곽규택
박덕흠 · 조배숙 · 김대식
강명구 · 박충권 · 김미애
유용원 · 최보윤 · 윤상현
이준석 · 강대식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시 고지의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최소 비율
2. 수수료율·연체료율
3.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
4.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청구될 총 수수료
5. 일시 상환 방법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따른 잔여금액의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하는 비율 및 청구금액
2. 수수료·연체료
3. 이월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
4.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
5.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청구될 총 수수료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용카드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3항 중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6조의6(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시 고지의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신용카드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최소 비율</u> <u>2. 수수료율 · 연체료율</u> <u>3.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u> <u>4.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청구될 총 수수료</u> <u>5. 일시 상환 방법</u> <u>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p><u>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u></p>

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따른 잔여금액의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하는 비율 및 청구금액

2. 수수료·연체료

3. 이월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

4.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매 결제일에 청구될 예상 금액

5. 상환완료일까지 약정에 따라 청구될 총 수수료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용카드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7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⑤ (생 략)

1. 제1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6제2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④ · ⑤ (현행과 같음)